제927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(금융감독원)	1.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산출시 부채산정에 적용되는 최장만기 설정(강화) ○ 은행업감독규정 <별표6>에 따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산출시 부채산정에 적용되는 최장만기 설정 – (대상 대출) 약정만기가 40년을 초과하는 가계대출 전체 – (산정만기) DSR 산정시 최장만기를 40년으로 적용 (종전에는 별도 만기상한이 없었음) ▶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	1.비중요
2	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(금융감독원)	1.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산출시 부채산정에 적용되는 최장만기 설정(강화) ○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<별표3>에 따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산출시 부채산정에 적용되는 최장만기 설정 – (대상 대출)약정만기가 40년을 초과하는 가계대출 전체 – (산정만기)DSR 산정시 최장만기를 40년으로 적용 (종전에는 별도 만기상한이 없었음) ▶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조의2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(금융감독원)	1.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시 부채산정에 적용되는 최장만기 설정(강화) ㅇ 상호금융업감독규정 <별표2>에 따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산출시 부채산정에 적용되는 최장만기 설정 - (대상 대출)약정만기가 40년을 초과하는 가계대출 전체 - (산정만기)DSR 산정시 최장만기를 40년으로 적용 (종전에는 별도 만기상한이 없었음) ▶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조의3	1.비중요
4	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(금융감독원)	1.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산출시 부채산정에 적용되는 최장만기 설정(강화) ㅇ 보험업감독규정 <별표21>에 따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산출시 부채산정에 적용되는 최장만기 설정 - (대상 대출) 약정만기가 40년을 초과하는 가계대출 전체 - (산정만기) DSR 산정시 최장만기를 40년으로 적용 (종전에는 별도 만기상한이 없었음) ▶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-7의2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5	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 (금융감독원)	1.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산출시 부채산정에 적용되는 최장만기 설정(강화) ㅇ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<별표5>에 따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산출시 부채산정에 적용되는 최장만기(40년) 설정 ▶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	1.비중요
6	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의무(신설) ㅇ (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)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의 업무 및 운영방식 등 규정 ㅇ (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)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업무 및 운영방식 등 규정 ㅇ (인증기관 관리) 산업부장관이 인증기관의 관련법령 및 업무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 ㅇ (설비확인서 발급 등)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설비심사 및 평가 결과 청정수소 인증기준에 부합할 경우 설비확인서를 발급 ㅇ (설비확인 및 인증 심사기록의 보존) 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은 청정수소 인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기록을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 ㅇ (인증기준의 유지점검)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은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 ㅇ (청정수소인증정보시스템)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청정수소 인증업무의 전자적 처리, 인증제의 효율적 운영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및 정보공유 등을 위해 인증정보시스템을 구축 · 운영 ▶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,제4조,제6조,제14조,제18조,제21조,제24조 2.청정수소 설비확인 신청인 및 생산 · 수입 · 판매자의 의무(신설) ㅇ (설비확인의 신청 및 접수) 청정수소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인증운영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청정수소 설비가 청정수소 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임을 확인받도록 규정 ㅇ (온실가스 배출량 산정) 신청인은 설비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 ㅇ (청정수소 인증서의 발급) 청정수소 인증서의 발급 절차 등 규정 ㅇ (청정수소 거래신고) 청정수소를 생산 · 수입 · 판매하는 자는 분기별 생산 · 수입 · 판매 내역 등을 산업부 장관에게 신고 ㅇ (설비확인 내용의 변경 등) 청정수소 설비확인을 받은 자는 생산설비 등 변동시, 청정수소 설비확인서 변경 신청을 하도록 규정 ▶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,제10조,제16조,제22조,제23조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3.청정수소의 등급 및 등급별 인증기준(신설) ㅇ 청정수소의 등급 및 등급별 인증기준을 규정 ▶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, 별표1	
7	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(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HELICOPTERS)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현장안전유도요원 교육훈련 의무 신설(신설) ㅇ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동체 외부에 화물을 적재하는 헬기의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안전유도요원을 투입하려고 할 때 사전에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해당 요원이 미리 이수하도록 의무화 ▶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(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HELICOPTERS) 제4장9절	1.중요
8	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(소방청)	1.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(강화) ㅇ 무선통신점검기능 확대 – 시각경보장치에서도 점검신호 발신이 가능하도록 하고, 적용 기준 신설(24시간 이내 주기, 200초 이내 수신 등) ㅇ 시각경보장치 외함의 시험기준 강화 – 열변형 시험 기준 강화(온도 5도 상승, 7일 신설) – 플라스틱 재료의 난연성 평가(UL94) 시험기준 도입 ▶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,제15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9	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(소방청)	1.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(강화) ㅇ 관창의 성능 안정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규정 – 최고사용압력 규정 – 관창 내압력 시험 강화 – 표준형 용어삭제에 따른 반영 – 수력작동시험 후 확인시험 강화 – 저 · 고온시험 후 확인시험 강화 – 염수분무시험 도입 – 비금속물질 노화시험 도입 – 방사패턴시험 도입 – 제어시험 도입 – 손잡이 강도시험 도입 ▶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의2, 제8조,제9조,제9조의2,제9조의3,제10조,제11조,제12조,제13조,제14조	1.비중요